병역지정업체선정

개요	병역지정업체선정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편입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군사교육소집	위반시 벌칙 규정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규정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 병무청「산업지원 병역일터」포털: http://work.mma.go.kr (병역지정업체 검색, 채용공고)

업무흐름도

산업체/ 연구기관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의 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매년 1월, 6월	평가등급 부여	매년 2월, 7월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 5월, 11월	선정결과 수령

※ 상반기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주요 처리사항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1월)

선정 구비서류

선정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구비서류내용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

인쇄

※ 평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는 추천기관(접수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공고에서 확인

연구기관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자연계

구분	분C	i i j	추천기준		추천권자 (접수기관)
박사과정	자연계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 단)
과학기술		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の	∥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 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대 기업은 제외)	
			무설연구기판은 2인) 이상확보 * 창업기업에 한해 1인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처 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국(공)립 등 연구기 관	공공기관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 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 상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 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 5인 이상		
기업 등 부설 연구 소		의료연구	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	d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설립 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서 자 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특정연구기관 (과기원제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기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관	
	대학부설연구기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자연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 단)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지역혁신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저 실시 연구기관	안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 소장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분야별	업종	선정기준	추천권자(접수기관)
	철강,기계, 전기,전자, 화학,섬유, 신발,생활용 품,통신기 기,시멘트· 요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또 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 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의료의약	상동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대한화장 품협회)
	농산물가공	상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
	동물의약품	상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동물약품협회)
	임산물가공	상동	산림청장 (산림청)
공업	식품음료	상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수산물가공	상동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
	정보처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S/W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게임S/W세 작, 애니메 이션제작, 영상게임기 제조업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사업장 게임S/W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마이스터고 또 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 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컨텐 츠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해운·수산	해운	총톤수 합계 1천5백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 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총톤수 합계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관리 업체	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운협 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 국해운조합)

분야별	업종	선정기준	추천권자(접수기관)
	수산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 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 는 업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 회)
광	r업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수 10 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너지		발전 및 발전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건설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 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 회)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선정제외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체(산업체)

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업 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산업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산업체)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가상자산 업체: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하는 업체(특정금융정보법 제 2조제1호하목)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업체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승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단,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선정취소

취소사유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 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취소절차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위 취소대상 업체 중 5)과 6)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대상업체 사전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기업규모/업종 등 변경

병역지정업체의 기업규모, 업종(분야) 등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기준 연혁

종전(병무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연도	선정기준 (종업원 수)		인원배정 기준	비고
'93~96년	중소기업:5인 이상	병역지정업체수 및 지원인력 규모 감 안, 병무심의위원회 에서 결정	종업원수 관계없 이 모든 병역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96년부터 대기업 선정 제 외
'97년	중소기업:10인 이상			
'98년	중소기업:10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종 업원수 기준 완화 요구 ('97.4.22 정보통신부)
'99년	중소기업:5인 이상 벤처기업:3인 이상		인원배정	
'00년	중소기업:5인 이상			'00년부터 추천권자 평가 제 적용

현행(훈령 규정)

연도	선정기준 (종업원 수)	인원배정 기준	비고
'01년	5인 이상		
'02년~'06년	30인 이상	도 인원매성	
'07년	15인이상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규제개혁 차원 에서 기준 완화 ('05.12.1 규제개혁기획 단 등)
'08년	15인이상	15인미만 업체제외	
'09년	10인이상	10인미만 업체제외	경기활성화 한시적완화 ('09.4.29)
'10년	10인이상 (연구인력포함)	10인미만 업체제외	청년 벤처 기업활성화 ('10.2.5)
'13년	10인 이상(연구인력 포함) * 산학협약 벤처기업 은 5명이상	10인미만 업체제외	벤처기업 인력난 완화 ('13.1.24)

[※]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http://www.rndjm.or.kr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기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12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5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38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157

[※] 중소기업으로 추천권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 매년 6월 초 위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8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5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58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4	인천병무지청	032-454-228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53, 4256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810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16